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비상대책위원회 미팅 (2차)

수 신	감사위원 및 비상대책위원 등
-----	-----------------

일 시	2022.08.19 16:00
장 소	화상원격회의

성 원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감사원 감사원장 심형주		
재 석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감사원 감사원장 심형주		
지 각		결 석	

회 순	생략
-----	----

부의 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 유권해석 및 감사시행세칙 제22조제4항(신설)에 따른 4분기 감사 진행 방식 질의 2. 감사위원 인원 증원 논의 3. 감사원 회계 방식 논의 4. 현행 회계감사 진행 방식 및 징계 관련 세칙 개선 논의
-------	---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 유권해석 및 감사시행세칙 제22조제4항(신설)에 따른 4분기 감사 진행 방식 질의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작성자 재정국장 한정현

1. 제안이유

- 16-17년도 「학생회칙」 전부 개정(18년도 발효)으로 예산안 및 결산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 총 3회 진행됨.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
- 예산안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현재 일년에 총 3회 진행됨. 각각 3월, 9월, 12월에 정기 전학대회에서 심의함.
 -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
 - 그 밖의 산하기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마찬가지로,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일 년에 총 3회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까지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일 년에 총 2회 진행됨.
- 관련 사안을 작년 감사원-비대위 미팅에서 전달하였지만 코로나19 및 집행력 부족 등으로 2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는 하반기 전체로 진행함.(4분기, 1분기 분할하지 않음)
- 예산안 심의와 회계감사(결산 심의) 주기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3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는 관련된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함.(아래 3. 참고)

2. 주요내용

-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167조제3항제2호(아래 3. 밑줄)의 유권해석안을 중운위에 발의하고자 함.
 -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해석을 기존
- 이에 감사원에서도 회계감사(결산 심의) 주기를 맞출 것을 제안함
 - 단, 회계감사보고서 제작 주기는 기존대로 상/하반기(연 2회)로 하되, 회계감사자료 제출을 상반기, 4분기, 1분기(연 3회)로 바꾸는 안도 가능하다고 봄.

3. 참고 사항

제165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2.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3.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3.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3.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4.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22조(회계감사)

1. 감사원은 각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2. 감사원은 「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회계감사를 진행한다.
 1. 1분기 검사
 2. 2·3분기 검사
 3. 4분기 검사
3.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4분기와 1분기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함께 심의받는 단체의 경우 상반기 검사와 하반기 검사만을 시행할 수 있다.

(회의 속기)

비대위: 예산안 및 결산을 4분기, 1분기 총 2회 제출받음. (예산안은 비대위 측에서 일괄 정리하여 제공 가능) 예산안 심의: 상반기/4분기/1분기 (일부 단체 -> 이번 유권해석 통해서 전체 단체로 확장)

감사원: 이부분은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

논의결과

- 4분기/1분기 예산안 및 결산 2회 제출받고, 감사보고서는 하반기로 제작
- 각 예산안은 비대위에서 수합하여 제공

안건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1. 제안이유

- 학부총학생회:감사시행세칙 제 3장 17조

제3장 감사, 제1절 통칙

제17조(감사 분류)

1. 감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 본 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별감사: 제보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요청하거나,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사안에 관련한 특정 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
 3. 일상감사: 본 세칙에 규정된 항목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
2. 감사는 다음 호의 항목에 관하여 시행한다.
 1. 회계감사: 회계·결산의 적절성 및 투명성 검사
 2. 직무감찰: 사무 및 위원의 직무 적절성 감찰
 3. 감사는 서면감사·실지감사·출석답변 외 그 밖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21조(제보 및 조사)

1. 본회 회원은 본회 소속 피감기관 또는 그 간부가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할 수 있다.
2. 감사원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하며, 해당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감사원은 조사 결과 및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 감사원장, 총무, 인사담당자. 매 학기 실행하는 정기감사로 현 3명의 역할 포화 상태
- 21조에 대한 본회 회원들의 인식 및 제보 미미, 학생사회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인식 개선 및 제보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 특별감사, 일상감사를 홍보 및 제보창구를 담당하는 감사원 인원 증원

2. 주요내용

- 이에 따라 감사원의 총 인원을 6명 → 8명으로 늘리고자 함
- 새로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의 주요 업무
 - 정기 감사의 분담
 - 제 21조에 대해 본회 회원들에게 홍보 시행
 - 본회 회원의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사실” 을 제보 받는 창구 마련
 - 받은 제보 취합 및 감별 후, 감사원 내에서 특별 감사에 대한 제안 및 진행을 총괄

(속기)

비대위: 감사 업무의 로드를 이해하므로 증원 자체는 다들 공감할듯 8명 괜찮은지?

감사원: 8명으로 괜찮을듯

8월 정기 중운위: 세칙 개정안 발의 (매달 넷째주 수요일)

9월 정기 전학: 세칙 개정안 심의 -> 의결 -> 공포 -> 5일 후 발효, 기존 회칙대로 감사위원 3인 인준

이후 2인을 추가 인준 (전학대회, 서면의결 가능)

—

감사보고서 일정 (대략)

학기 전 매뉴얼 배포 (다음주 토요일까지 초안 제작, 일요일 배포)

학기 시작하고 제출 받기 시작 ~ 둘째주까지 제출 (2주)

정기 감사 기간: 2주

—

정리

금일 중 신규조문 대비표 제공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개정안 서류 작성

수정하여 일요일까지 안건 제출

안건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1. 제안이유

- 현재 감사원의 재정이 중앙회계로 부터 명시적으로 배정되어있지 않아 “독립적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제2장 감사원

제16조(재정)

감사원의 재정은 중앙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34조(회계감사보고)

정기회계감사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의 확인
2. 제2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점수 및 감점, 주의 항목
3.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4.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5.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6.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2. 주요내용

- (제안 사항1)
- (1) 감사원 회의비, (2) 리크루팅 홍보비, (3) 특별감사, 일상감사 제보 방법 및 필요성 홍보 대한 사업비를 다른 피감기관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앙회계로 부터 직접 배정받고자 함

(속기)

중앙회계 기한 내 신청 -> 집조위/중운위 거치면서 예산안 확정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작성자 재정국장 한정현

1. 제안이유

- 현행 회계감사자료에는 예산안이 필수가 아니므로 "심의없는 예산 집행" 등의 감사 항목을 회계감사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임.
- 「학생회칙」, 「재정운용세칙」 및 「감사시행세칙」에 규정된 징계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고 부실한 상황.
- 「감사원규칙」 및 「감사시행규칙」은 현재 제정되지 않은 상황.

2. 주요내용

- (제안 사항1) 정기회계감사 시, 해당 분기 예산안을 필수 제출로 변경.
 - 예산안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 집행(심의없는 예산 집행) 시 감사 점수 감점 및 징계안 발의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제안 사항2) 「감사원규칙」 및 「감사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회계감사 업무 수행.
 - 관련 업무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중운위 등 의결기구에서도 협업 가능함.

3. 참고 사항

방식(제출 자료)	감사의 정교함	예외 사항
결산표만 봄	☆☆☆☆☆	표대로 지출 안할 수 있음
결산표 + 통장거래내역을 봄	★☆☆☆☆	통장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할 수 있음
결산표+통장거래내역+통장사본을 봄	★★☆☆☆	(횡령을 못 막음) 세 자료의 숫자는 맞더라도 그 금액으로 다른것을 구입할 수 있음 ex) 예산 - 포스터 출력 5만원, 실 지출 - OO인쇄소(실제는 친구 통장)으로 5만원 출금 내역
결산표+통장거래내역+통장사본+증빙자료(보통 영수증)	★★★☆☆	예산대로 지출하지 않을 수 있음 (현행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감사 방식)
예산안+결산표+통장거래내역+통장사본+증빙자료(보통 영수증)	★★★★☆	비법인(비사업자대상)거래에 대한 불투명성

(속기)

비대위: 감사원 내부 감사용 매뉴얼이 있는지?

감사원: 내부용 매뉴얼 별도로 존재

비대위: 내부용 매뉴얼에 이번에는 제출받는 예산안도 함께 대조하게끔 안내하면 좋을 듯

감사원: 그렇게 하겠음.

서명: 감사원

위원장

심형주

(인)



서명: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J.H. Han